

# 우대 대상자 증빙서류 안내

## 1 증빙서류

구분	제출서류	비고
저소득층 (기초생활수급자) 차상위계층	1.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증명 2. 차상위계층증명서 3.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	3개 중 1택
장애인	1. 장애인 증명서 2. 복지카드	2개 중 1택
한부모 가정	1.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2. 가족관계증명서 1부	2개 필수 제출 관련법 1 참고
다문화 가족	1. 국적취득증명서 1부 (국적 취득시) 2.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(부 또는 모, 해당자에 한함) 3. 가족관계증명서 1부	3개 필수제출 관련법 2 참고
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	1. 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서 2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	2개 필수제출
여성가장	1. 한부모가족증명서 2. 가족관계등록부	2개 중 1택
보훈보상대상자	1.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	-
국가유공자	1. 국가유공자(자녀) 증명서	관련법 3 참고
위탁가정 및 아동보육 시설 재원자	1.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(퇴소)증명서 1부 2. 주민등록등본 1부	2개 필수제출 관련법 4 참고
북한이탈주민	1. 북한이탈주민 확인서	-
결혼이주자	1. 결혼비자(F-6비자)	-
지방인재	1. 최종학교 졸업(예정), 휴학, 재학증명서	3개 중 1택
고졸자	1.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1부 2. 학자금대출/장학금 신청증명서 1부 제출이 가능한 자 (한국장학재단(www.kosaf.go.kr)에서 발급되는 서류로 대학 학자금/장학금 신청사실이 '없음' 을 증명하는 서류임)	2개 필수제출

## 2 관련 준용 법규

<p>1. "한부모가족 지원법"에 해당하는 자</p>	<p>제4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"모" 또는 "부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(遺棄)된 자</li> <li>나.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다. 미혼자{ 사실혼(事實婚)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}</li> <li>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</li> </ul> </li> <li>2. "한부모가족"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.</li> <li>3. "모자가족"이란 모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(世代員)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</li> <li>4. "부자가족"이란 부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</li> <li>5. "아동"이란 18세 미만(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)의 자를 말한다.</li> </ol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<p>2. "다문화가족 지원법"에 해당하는 자</p>	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"다문화가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</li> <li>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</li> </ul> </li> <li>2. "결혼이민자등"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</li> <li>나. 「국적법」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</li> </ul> </li> <li>3. "아동·청소년"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</li> </ol>
<p>3. "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"에 해당하는 자</p>	<p>제2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(이하 "취업지원 대상자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</li> <li>2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</li> <li>3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</li> <li>4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</li> <li>5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</li> </ol> <p>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.</p> <p>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.</p>
<p>4. "아동복지법"에 해당하는 자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. "아동복지시설"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.</li> </ol> <p>제14조(아동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
<p>5. "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"에 해당하는 자</p>	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"장애인"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li> </ol> <p>제3조(장애인의 기준)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(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/ol>